



: 2019-01-29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나201367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시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6,152,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3,055,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2행의 '○ 구매계획' 표 중 '구매단가'의 각 '1,000,000원'을 모두 '100,00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으로써 청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기술개발 성공 이후 승낙의 통지에 대한 연락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2015. 4.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2016. 1. 22. 원고의 민원에 대해 1년차에 5,000대, 2년차에 8,000대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



는 등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개발제품 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설령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안요청서 및 기술개발계약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개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개발제품 60,000개를 구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총 예상구매액 6,000,000,000원(= 구매수량 60,000개 × 구매단가 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그 중 일부청구로서 피고가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2년간 이 사건 개발제품 13,000개를 구매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투입비용 합계 상당액인 776,152,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제품 중 13,000개를 구매하는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피고는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는 피고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방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776,152,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개발제품에 관한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구매 수량, 단가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개발제품에 관한 구매계약 체결 여부와 피고가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이 사건 개발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 '개발완료 후 구매단가 100,000원으로 하여 1년차 5,000개, 2년차 8,000개, 3년차 8,000개, 4년차 10,000개, 5년차 10,000개, 6년차 이후 19,000개, 합계 60,000개(예상구매액 합계 6,000,000,000원)의 개발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 제 9조 제2항 본문은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을(원고)이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에 갑(피고)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9, 14, 15, 18, 22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에는 '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은 업체가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와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인증서를 발급받은 개발제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은 수요처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 성공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 기간 동안 개발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요처의 장이 제출한 예상구매액보다 적게 구매한 경우 해당 사유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수요처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의 대표자였던 B시장 H이 2014. 7.경 방송 등을 통해 이 사건 개발과제를 자신의 시정 홍보사례로 활용하기도 한 사실, 감사원이 2015. 2. 9.경부터 4. 17.경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2015. 7.경 작성한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감사보고서'(갑 제14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현장점검 결과 이 사건 개발과제에 관하여 구매 여부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관한 관리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개발제품 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합계 60,000개(예상구매액 합계 6,000,000,000원)의 이 사건 개발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i) 이 사건 제안요청서는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예상구매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ii) 제안요청서는 주관기관도 선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개발과제의 성공 여부 및 결과물의 구체적 사양이 확실하지 않은 채 피고가 발굴한 구매조건부 사업과제가 중소기업청의 공고대상 과제로 선정되기 위하여 그 개발의 필요성, 구매계획 등을 기재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주관기관에 공개되는 정보가 아닌 점(원고 역시 2015년 초순경 피고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제안요청서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iii) 제안요청서의 공고를 보고 응모한 개발자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기술개발계약을 거쳐 구매계약까지 체결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절차이고, 원고 역시 이러한 절차를 알고 있었던 점, iv)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 제9조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6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구매'를 피고가 확약하거나 보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예상구매수량·단가·총구매액 등이 피고의 계약내용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것으로서, 제품의 사업화가 이루어질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별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기재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의 내용 중에는 개발제품의 구매 수량, 단가, 납품시기 등 구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제9조(특히 제2항 단서)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수요처(피고)가 주관기관(원고)으로부터 개발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예상구매액보다 적게 구매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요처에 대하여 국가 연구개발 과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수요처와 주관기관 사이에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법(私法)



상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수요처가 주관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대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관련 법령이 규정한 수요처는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의 내용 중에는 개발제품의 구매 수량, 단가, 납품시기 등 구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화가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기술개발 성공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사건 개발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답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2016. 1. 22.자 민원회신(갑 제10호증의 1)은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구매예정수량을 기재한 이 사건 제안요청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일 뿐 원고와 이 사건 개발제품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부분 역시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

⑥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장차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것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단가, 수량, 구매시기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까지 있었다거나, 이에 대해 피고가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피고가 2년간 이 사건 개발제품 13,000개를 구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3. 가. 2)항 기재와 같



은 이유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판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제출,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일련의 행태를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개발제품 구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기대 내지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이 사건 개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구매계약 자체에 내재한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유를 들어 구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①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피고가 중소기업청의 'D사업'에 이 사건 개발과제를 요청하여 신규과제로 선정되었다.

② 원고는 C의 'D사업 시행계획 공고', '수요조사과제 과제제안요청서 목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개발과제에의 응모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작성·제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에는 '사업의 성공판정을 받은 업체가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의 개발제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 제9조 제2항 본문은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원고가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에 피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구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피고는 개발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 등에 표시된 피고의 의사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④ 피고는 2013. 6. 28. 'K'를 개최하고 이 사건 개발과제에 대하여 '충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므로 제안의 필요성이 명확하며, 시행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으로 이 사건 개발과제를 K에 상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제품을 개발 완료하면 원고로부터 이를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C은 2014. 8. 11. 피고에게 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개발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서나 구매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0. 1.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5. 4. 7. 60일 이내에 이 사건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회신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그때에도 구매계획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수요처인 피고가 개발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다른 수요처를 물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제품의 판로를 개발할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었다.

⑥ 피고는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자 2015. 10.경에야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2016. 3. 18. L아파트의 2020년 준공 이전에 구매추진을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우선구매조치계획을, 2016. 5. 18. M아파트에 시범적으로 구매설치할 예정계획임을 회신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제품 중 56대를 구입, 설치할 예정이므로 견적서를 송부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소기업청에 구매계획서를 제출하고 원가계산을 하는 절차를 거친 후 원고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위 56대는 이 사건 개발제품의 생산 구조상 생산단가를 맞출 수도 없는 규모였으며, 위 56대 외에 추가로 구입할 물량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 원고가 이에 응할 수 없었다.

⑦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취지 및 목적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구매의사를 신뢰한 것은 단순한 사실적 기대의 수준을 넘어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⑧ 피고가 원고와의 구매계약 체결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주로 관련 조레나 예산 등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구매계약 체결 거부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볼 수도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2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개발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입한 총 비용은 267,096,59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개발비용 중 184,000,000원은 증소



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구매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에 파기함으로써 피고의 구매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지출한 기술개발비용 83,096,599원(= 267,096,599원 - 18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손해액이 '피고가 2년간 이 사건 개발제품 13,000개를 구매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한 776,152,412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 점(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개발제품 13,000개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② 피고가 구매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지 않고, 원고와 사이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경우 '2년간 이 사건 개발제품 13,000개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구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 기재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정부출연금 중 민간부담금 14,668,000원과 기술료 18,384,000원은 원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감정평가금액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에 의하면 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은 184,000,000원이고, 원고가 부담한 민간부담금은 14,668,000원으로서 서로 별개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부출연금 중 민간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하면 안 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제18호에 의하면, '기술료'란 기술



개발사업의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과제 성공 이후 기술료 18,384,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술료가 정부출연금의 일부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개발제품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개발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을 수행했고, 개발 완성 후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 원고의 투자 및 자본 부족으로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된 것은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신뢰에 기초한 것인 점, ②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을 신뢰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제품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결국 피고의 책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83,096,59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 이후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기타개발부분 산정에 있어 85,482,650원 상당 부분이 누락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 감정 당시 감정인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각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하였고, 제1심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입된 총비용을 산출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4회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총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민간부담금과 기술료에 대해서만 주장하였을 뿐 제1심 감정결과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2018. 9. 18.자 답변서에서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비 총 집행액이 248,860,218원이고, 그중 정부출연금은 184,000,000원이며, 원고가 부담한 64,860,218원 중 민간부담금이 14,668,000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등 현물출자라고 설명하기도 하여 오히려 제1심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출되었음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이유로써 주장하는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실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
: 2019-01-29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박선영

 판사 오영상